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외 1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49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중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에 관한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2064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1조의3 제1항).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19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2022. 12. 1. 피고인 1의 공소장 기재 주소지로 공소장 부분 등을 송달하였다.

2) 제1심 변호인은 피고인 1을 대리하여 2023. 2. 2. 피고인의 송달영수인으로 제1심 변호인을, 송달장소로 그 사무소를 각 기재한 신고서를 제1심에 제출하였다.

3) 제1심은 2023. 9. 13. 피고인 1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1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다.

4) 원심은 2023. 9. 27.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하고 2023. 10. 4.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다.

5) 원심은 2023. 10. 5.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피고인 1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다.

6) 피고인 1은 원심에서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2023. 10. 10. 그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7)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2023. 10. 16.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다.

8) 원심은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23. 11. 7.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고, 2023. 12. 19.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다. 원심은 2024. 1. 30. 제3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제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

주 심 대법관 김선수 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